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31일, 오세희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1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9.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 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25.)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오세희의원)

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은행은 2023년 기준, 이자이익 59.2조원 및 당기순이익 21.3조원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는데,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대출금리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상생금융지수를 산정·공표하도록 하고,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0호의2, 제4조 및 제20조의6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및 중소기업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로서 상생금융지수를 산정·공표(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0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4조제2항제6호의2 신설)하도록 하는 한편,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안 제20조의6 신설)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를 산정·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¹⁾로 대체²⁾³⁾할 수 있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동반성장지수”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2)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자동차·전자 등 업종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행법 제15조에 따른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하여 왔으나, 2010년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관계부처 합동, 2010.10.29.) 이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지수를 동반성장지수로 통합·운영하게 됨. 이에 따라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법률 개정(법률 제12002호, 2013.8.6.개정 및 시행)이 이루어짐. 당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는 개별 대기업(‘12년 74개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나, 산업별·거래단계별 동반성장의 확산정도 및 산업계 전반의 동반성장 체감정도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상생협력지수’를 운용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상생협력지수에 관한 현행 근거조문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제1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방법 및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생협력지수를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면제 등 혜택⁴⁾이 제공됨.

동반성장지수 평가 및 공표 제도는 2008년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하여 마련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관계부처 합동, 2010. 9. 29)의 정책과제 중 하나로 2011년 도입되어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음.

개정안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제도를 금융회사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도입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상생금융지수는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및 중소기업의 만족도 조사 등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인데, 상생협력 실적 및 만족도 조사는 각각 동반성장지수의 실적평가 및 체감도 조사⁵⁾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음.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 외에도 평판 제고⁶⁾에 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반성장지수 평가 및 공표 제도는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적극

4)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 혜택(출처: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기획재정부(조달청)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세청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공정거래위원회	최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1년간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참여 시, 우수등급 기업 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최우수등급 기업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년간 면제(격년)
동반성장위원회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중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자를 선정하여 위원장 포상 수여

5)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 설문(체감도)조사(정성평가 70%) 및 대기업별 실적평가(정량평가 30%)를 합산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정량평가)를 50:50으로 합산한 것으로, 그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공표함(참고자료 1).

6)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는 평판효과를 통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박충렬, 「동반성장지수의 현황과 실효성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669호, 2013.6.12., p1-3).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⁷⁾. 따라서 개정안의 상생금융지수 도입은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의지를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정부는 금융권의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상생금융 관련 주요 추진방안」(금융감독원, 2023.7.25.)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⁸⁾」,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금융 과제 발굴⁹⁾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임. 이러한 정책 추진방안 중에는 대출금리 인하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상생금융지수가 도입된다면 이를 활용 및 연계한 제도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및 업계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7) 다만, 동반성장지수의 효과나 평가신뢰성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도 있음. 예를 들어,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의 선정은 매출액 등 기업규모, 중소기업과 거래정도,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 “동반위, '25년 동반성장지수 250개사 평가”, 2024.12.1.)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가대상 기업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보다 동반성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평가대상 기업이 보통 이 하 등급을 받음에 따라 ‘낙제’ 기업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오히려 비참여 기업보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음 [(박재규, 동반성장지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는가”(세미나, 2014.7.11.) 토론문, p47]. 또한, 동반성장지수를 토대로 한 동반성장정책이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동반성장지수 이행평가 방법이 기업의 서류제출이나 체감도 조사(설문지)를 통한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동반성장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음(정재을, “동반성장정책이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82집, 2018.12.17., pp172-175).

8) ①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총 2.1조원), ② 중소기업권 이자환급(0.3조원), ③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 2024.3)

9) 금융권이 각 업권의 특성에 맞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하여 총 1조 265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 2024.3).

·은행권: 가계 일반차주, 취약차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총 9,076억원 지원

·여전업권: 연체차주 채무감면, 취약계층 대환대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캐시백 등을 통해 총 1,189억원 지원

·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평균 2.5% 인하 등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상생보험 상품 13.4만건 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 추진중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6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2024~2026)¹⁰⁾’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현행 동반성장지수 제도를 활용하여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¹¹⁾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함.

중소기업중앙회는 2024년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의견조사¹²⁾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상생금융 정책에 관한 인지도가

10) 제6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중 ‘금융기관의 자발적 상생역할 강화’

- ☐ 은행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은행별 자체 상생금융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금리부담 완화 등 지원
 - * (실적) 중소·소상공인(약 71만명)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 약 2,730억원 지원(‘23.3~’24.2)
 - (전통시장) 전통시장-금융기관의 상생모델인 장금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대일 결연에서 전국시장과 금융기관간 통합협력으로 전환
 - * 42개 전통시장·10개 은행 결연(~’24.6월), 금융사기 피해 예방·특화 금융상품 제공
- ☐ 은행권 상생금융 평가 도입(동반위)
 - (단기) 은행 거래 중소기업 대상,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실시(’25~)
 - * 은행 대출 태도, 상생금융 체제 등을 설문 조사하여 체감도(만족도)를 평가
 - (중장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은행별 상생금융 수준을 파악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25)

11) 상생금융 실적 평가(2025년 실시 예정) : 은행 거래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 현행 동반성장지수에 포함하는 방안 등 연구용역 등

- ☐ 은행 거래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
 - (조사내용) 은행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의 대출 태도, 상생금융 체제 등을 설문 조사하고 만족도(체감도) 평가
 - (수행기관) 동반성장위원회
 - (추진일정) 조사지표 수립(~’25.6월)→ 조사대상기업 선정(’25.7월)→ 체감도 조사(’25.8~11월)→ 결과* 통보(’25.12월)
 - * ’25년 시행 첫해는 결과를 대외공표하지 않고,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에만 제공

12)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의견조사(중소기업중앙회)

· 조사대상: 중소기업 300개사

· 조사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3월 4일까지(8일 간)

‘잘 모르겠음’이 64.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¹³⁾, 상생금융을 알고 있었지만 이용하지 못한 사유로 ‘일반 대출 대비 장점 없음’이 42.9%,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35.7%로 나타나는 등 현행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생금융제도로써 상생금융지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반면에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실적을 평가하고 지원 확대를 유도할 경우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금융시장 혼선 초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며, 현재 경영 건전성 확보,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경영실태평가¹⁴⁾를 통해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조사방법: 전화조사

13) ‘잘 모르겠음(64.3%)’, ‘알고있지만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했다(23.3%)’, ‘알고 있고, 이용했다(12.3%)’순으로 조사됨.

<상생금융 예시> (조사 설문자료)

- 금리인하: 대출금리 7% 초과분에 대해 최대 2~3%p 금리인하 또는 상품별 최대 1% 금리감면
- 변동·고정금리 변동 옵션: 매 6개월 단위 고정·변동금리 선택 옵션 또는 고정금리 선택 시 금리감면
- 원금상환 지원: 대출금리 7% 초과분에 대해 최대 3% 대출원금 상환 또는 연체계좌 연체이자분 원금상환 지원
- 연체이자율 감면: 기업여신 연체이자율 1~3%p 감면

14) 「은행법」

제44조(은행의 감독)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그 밖의 관계 법률, 금융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 은행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은행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1.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해당 은행 또는 은행 국외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2. 외국은행지점, 은행 국외지점에 대한 경우 : 해당 지점의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을 유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만족도와 같이 중소기업의 주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상생금융지수의 도입은 대출 심사,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금융회사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신용평가 및 대출관리에 불필요한 간섭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갑을관계가 명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와는 구조적·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기업의 주관적 평가를 의식한 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의 거래를 기피하게 되면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④ 제3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과 부문별 평가비중은 <별표5>와 같다.

⑤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은행 본점,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 및 국외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만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은행 본점,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 국외현지법인 및 정리절차 진행 등으로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비를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 은행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중저신용자대출 지원의 적정성, 관계형금융 이행실태, 지역별 금융지원 이행실태, 중소기업대출비용 준수실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지원실적 등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